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95
----------	-------

발의연월일 : 2026. 1. 7.

발 의 자 : 복기왕 · 최혁진 · 김승원
맹성규 · 손명수 · 정준호
안태준 · 문진석 · 이연희
전용기 · 박용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7조제1항은 여객열차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 규정 중 철도종사자와 여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열차 이용 과정에서는 노출 행위, 위생상 위해가 있는 행위, 반복적·고의적인 불쾌 행위 등 성적 요소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여객에게 심각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여 열차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금지행위로 ‘성적 수치심’으로 한정하고 있어, 성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불쾌·혐오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제재 및 사후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철도종사자의 관리·제지 권한 행사에 혼선이 발생하고, 피해 여객의 권익 보호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열차 내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5호).

법률 제 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수치심을”을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 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①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u>수치심을 일으키</u> 는 행위	5. ----- -----불쾌감 또는 혐오 감을-----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